

#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4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16.

발 의 자 : 이원욱·최재성·변재일  
이후삼·이학영·박경미  
조응천·고용진·인재근  
홍익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점검하여 해당 공직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.

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재산, 병력 등 사적 영역에 치우쳐 실시되고 있어 인사청문의 본질인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,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가 하면,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병역,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

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).

##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인사청문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병역사항, 범죄경력 및 재산 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 검증을 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둔다.

② 인사청문소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③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검증을 마쳤을 때에는 인사청문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검증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④ 그 밖에 인사청문소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사청문소위원회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등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4조의2(인사청문소위원회) ①</u>  <u>위원회는 병역사항, 범죄경력</u>  <u>및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</u>  <u>자의 윤리 검증을 하기 위하여</u>  <u>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인사청문소위원회는 공개하</u>  <u>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③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검증</u>  <u>을 마쳤을 때에는 인사청문소</u>  <u>위원회 위원장은 그 검증 결과</u>  <u>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</u></p> <p><u>④ 그 밖에 인사청문소위원회</u>  <u>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</u>  <u>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